

학교 급식비 공지사항

1. 학교 급식비의 결정

- 1년 동안의 학교 급식비는 ‘한 끼 단가×연간급식 예정 횟수’로 계산됩니다.
- 납부 금액은 정액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6월 중순에 ‘학교 급식비 납부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합니다.
- ‘우유 중단’은 ‘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발효유 등의 음료 전반이 지급 중단됩니다.
- 2025년 4월부터 학교 급식비를 개정하였으나, 2025년도는 시 부담금과 국가 교부금으로 일부를 보조받아 보호자가 부담하는 한 끼당 금액은 굵은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의 금액입니다.

		개정 후 한 끼당	보호자 부담금			연액			월할액		
			완전 급식	우유 중단	우유만	완전 급식	우유 중단	우유만	완전 급식	우유 중단	우유만
초등학교		317	270	205	65	50,490	38,335	12,155	4,600	3,500	1,200
중학교	1, 2학년	376	320	255		52,800	42,075	10,725	4,800	3,900	1,000
	3학년	376	320	255		49,600	39,525	10,075	4,600	3,600	1,000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	211	180	115		32,940	21,045	11,895	3,000	2,000	1,100
	초등부※	317	270	205		49,410	37,515		4,500	3,500	
	중학부 고등부	376	320	255		58,560	46,665		5,400	4,300	

※특별 지원 학교 초등부의 각 분교실은 초등부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2. 학교 급식비의 납부 방법

- 학교 급식비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등록은 납부일의 전월 20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주말·공휴일의 경우는 다음 영업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 2025년도의 계좌 이체일(납부일)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지불 방법이 납부서 지불인 경우는 매월 20일 전후에 ‘학교 급식비 납부 통지서’에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납부일	6월 30일	7월 31일	9월 1일	9월 30일	10월 31일	12월 1일	1월 5일	2월 2일	3월 2일
대상 월	4, 5월분	6월분	7월분	8,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1월분	2, 3월분

학교 급식비의 자동 이체를 통한 납부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뒷면 URL 참조)

3. 주소, 이름,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 학교 급식비 부담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변경됐을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내용	학교에 제출할 서류	비고
주소(배포물을 받아볼 곳)	없음※	※주소가 변경됐을 때는 구청에 신고한 새 주소로 배포물 발송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학교 급식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u>구청에 신고한 주소 이외의 주소로 발송을 원하는 경우는 ‘학교 급식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반드시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u>
학교 급식비 부담자의 이름	학교 급식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전화번호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고등부 재적자는 ‘학교 급식비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급식비 이체 계좌 정보가 변경됐을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내용	필요 절차
이체 계좌 변경	뒷면의 ‘Web 자동 이체 접수 사이트’를 통해 새 계좌 정보를 등록해 주십시오.
계좌 명의 변경 (성(姓) 변경 등)	‘학교 급식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통장 사본 등 변경 후의 명의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학교 급식비 중단·재개·변경(학교 급식비 조정)

(1) 학교 급식 제공의 중단·재개·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학교 급식을 ‘중단(먹지 않음)’, ‘중단 후 재개’, ‘급식 내용 변경(우유 중단 또는 우유만 제공)’을 원하는 경우는 사전에 학교에 연락하신 후 ‘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학교 급식비가 조정됩니다. 먼저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를 중단하거나 우유만 제공받는 경우 등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①급식 중단’, ‘②우유 중단’, ‘③우유만 제공’을 원하는 경우는 ‘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③의 구분에 따라 학교 급식비가 조정됩니다.

상병, 장기 결석 등으로 연속 4일 이상 급식을 먹지 않는 경우

상병, 장기 결석 등으로 급식 실시일 중 연속 4일 이상 급식을 먹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학교 급식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 급식비가 청구됩니다. 급식을 중단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보호자 간의 결석 상황 및 급식 중단에 대해 확인한 후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학교 급식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이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다른 시로 전출하는 경우, 사립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등은 일반적인 전학 절차는 알아야 하지만,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식자재 발주 문제로 인해, 곧바로 학교 급식비 청구를 중단할 수 없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 제출 주의 사항

학교 급식비 조정은 학교가 신고(‘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 또는 전학 신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8일(주말 및 공휴일 등 제외) 이후에 적용됩니다.

특히 학교 급식 중단 등의 경우, 신고받기 전까지 식자재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급식비가 청구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에 미리 신고해 주십시오.

늦게 신고하는 경우는 원하시는 날짜부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2) 학교 행사, 임시 휴교 등으로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학교 행사 등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날은 학교 급식비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 태풍이나 감염증으로 학교가 임시 휴교(학년, 학교, 학급 폐쇄)했을 때 등,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학교 급식비의 징수가 중단됩니다. 또한, 임시 휴교 등으로 갑자기 소비되지 못한 식자재는 SDGs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식당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급식비 조정(정산)은 제9기에 실시됩니다.

- 학교 급식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제9기에 실시합니다. 2월에 급식 실시 횟수를 바탕으로 1년 동안의 학교 급식비를 확정하고, 제9기 납부 금액에서 정산합니다.
- 조정을 마친 납부 금액은 ‘학교 급식비 납부금 변경 통지서’를 통해 2월에 공지됩니다. 다른 시로 전출하는 경우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제9기 납부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학교 급식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3월에 청구 및 환급됩니다. 추가 청구는 반드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학교 급식비 미납이 있는 경우는 환급하지 않고 미납금에 충당합니다.

(4) 학교 급식비의 지불이 어려운 경우

- 생활 보호와 취학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학교 급식비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인중에 시간이 걸려서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비를 납부한 경우는 인중 완료 후에 인중 대상분이 환급됩니다.

【문의】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급식추진실

전화 044-200-2539 팩스 044-200-1810

이메일 주소 88kyusyoku@city.kawasaki.jp

시 홈페이지 <https://www.city.kawasaki.jp/880/page/0000121366.html>



↑ Web 자동 이체 접수 사이트는 이곳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구분 변경신청서’와 ‘학교 급식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용지는 각 학교에서 배부하며, 위의 가와사키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계좌이체 납부의뢰서’는 학교에서 배부해드립니다.